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7. 6.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위한 구미시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 시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시민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기능을 개선하고자 실국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객중심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경제통상국」을 선임국으로 조정 기업하기좋은도시 위상제고
- 「홍보담당관」신설 도시홍보 및 마케팅 기능강화
- 「체육진흥과」신설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조
- 「도로과」, 「도시디자인과」신설 도시기능향상 및 경쟁력 강화

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기능 개선

- 본 청
 - 명칭변경
 - 기획정보실 → 「정책기획실」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국」
 - 지적과 → 「부동산관리과」
 - 혁신정책담당관 → 「정책혁신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예술담당관」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213('07.1.5)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통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실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경제통상국에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를 둔다.

②경제통상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 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및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출입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관한 업무
7.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8. 기업투자유치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9.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구미전자정보기술단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노동행정, 실업대책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7. 교통기획,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8.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
20. 새 주소사업에 관한 업무
21.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제6조(정책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①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혁신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5. 시의회 운영 지원
6.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정책사업 심사분석
7. 목표관리제 및 통합 성과관리 업무 운영
8. 행정혁신, 지방분권 업무추진 총괄 및 조정
9. 행정,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10. 전산, 통계, 통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11. 문서, 기록물 및 자료관 관리
12. 문화·예술의 육성
13. 문화재 보존관리
14. 관광사업 지도육성
15. 시정시책의 홍보
16. 시보, 시정신문 및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를 둔다.

②자치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의 지도·감독,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
4. 지역상황, 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조직관리,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교육훈련,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9. 국가균형발전관련 총괄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시민만족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5. 노인, 여성, 아동보육,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제9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
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
10.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위탁 보상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15. 시설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관내 타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
18.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
19. 도시경관 사업 추진
20. 건축 및 거리미관사업 추진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09번지에 둔다.

제14조(소장)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기술홍보사업
3. 4-H조직,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전업농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
5.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개선지도
6. 농업기술, 경영, 농업정책 사업에 관한 상담
7. 지역특화작목 품종개량
8. 새로운 품종 지역연락시험
9. 과학영농 시설운영
10.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개선 기술지도
11. 토양정밀 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 지도
12.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재배기술 지도
13. 우량가축 보급 및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14. 농민상담소 운영

제16조(농민상담소의 설치)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민상담소를 둘 경우 농민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미시평생교육원

- 가. 평생교육 계획 수립
- 나. 평생교육 관련 예산
- 다. 평생교육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라. 평생학습축제 운영
- 마. 위탁교육 운영
- 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 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평가
- 자. 강사DB구축 및 운영
- 차. 강사관리 및 평가·연수
- 카.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 타. 평생교육원 시설물유지, 관리

2.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업무
- 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 다. 상·하수도 경리 및 세입·세출 결산
- 라. 상·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
- 마. 시설물(상·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 바.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배급수에 관한 사항

- 사. 상수원관리 및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 자. 상·하수도 행정관련 업무
- 차. 하수종말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 타. 기타 상·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미시문화예술회관

- 가. 각종 공연, 전시계획 수립 및 유지
- 나. 시립 예술단 운영
- 다. 회관 회원제 운영
- 라. 기타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

4.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가. 도립공원, 동락공원 및 강변체육공원 조성·개발
- 나. 공원 행락질서 계도단속
- 다.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
- 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과태료 부과징수
- 마. 도립공원 및 동락공원, 강변체육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 바. 공원내 조경시행 및 수목관리
- 사. 도립공원 정화, 복원지구의 보존관리
- 아. 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관리
- 자. 도립공원 개발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5. 구미시립도서관

- 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 나. 도서관자료의 선정, 수집, 교환, 분류, 등록, 열람, 대출, 반납
- 다. 도서등록원부의 정리 및 보관
- 라. 청사 및 부속시설물 사용·임대 및 유지보수
- 마.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 바.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운영

- 사. 선산분관 운영
- 아. 인동분관 관리 및 운영
- 자. 이동도서관 운영

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농산물 및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경매장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 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및 운영
- 나.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다.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 바. 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8.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 가.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 나.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경로식당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라.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마. 노인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및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 사. 노인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노인 물리치료 및 양·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자. 노인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제5장 출장소

제20조(설치) ①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무, 보안, 복무단속, 공인관리
2. 일반민원 업무
3. 문서수발 및 통제
4. 선산문화회관 관리
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승인, 허가 및 협의사항 제외)
6.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및 농업환경 보존
7.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
8. 축산 경영개선사업
9.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10. 잠업,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도
11. 정부양곡 관리
12. 조림 및 육림사업
13. 산불예방 및 진화
14.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15. 산림병해충 방제

제6장 하부 행정기관(읍면동)

제23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2호,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혁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동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출)민원봉사과, (출)농정과, (출)유통축산과, (출)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기획정보실”을 “정책기획실”로 한다.

③「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④「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⑤「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⑥「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⑦「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⑧「구미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구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⑩「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담당관”으로 한다.

⑬「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담당관”으로, “문화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⑭「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5호중 “구미시 평생교육센터장”을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⑯「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동조제3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⑱「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⑲「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⑳「구미시지방세계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㉑「구미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지적과장”을 “부동산관리과장”으로 한다.

㉒「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보건소장”을 “구미보건소장”으로 한다.

㉓「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중 “폐기물시설담당”을 “환경시설관리담당”으로 한다.

㉔「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㉕「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정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㉖「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구미시민복지회관장”을 “구미시장”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㉗「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관리공연업무담당”을 “공연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㉘「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건설과 도로시설담당”을 “도로과 도로행정담당”으로 한다.

㉙「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㉚「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산림과장”을 “산림경영과장”으로 한다.

㉛「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기술보급과장”을 “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㉜「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㉝「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한다.

㉞「구미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를 “구미시 평생교육원 운영조례”로 한다.

구미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 제1조 내지 제9조중 “구미시민복지회관”을 “구미시평생교육원”으로, “시민회관”을 “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구미보건소 관할 >

구 분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보 건 소	구미보건소	구미시 지산동 853-12번지	구미시 일원 (제외 읍·면지역)
보건지소	인동보건지소	구미시 진평동 985-35번지	인동·진미·양포동 일원

< 선산보건소 관할 >

구 분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4-1번지	구미시 읍·면지역 일원
보건지소	고아읍보건지소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21-1번지	고아읍 일원
	무을면보건지소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808-2번지	무을면 일원
	옥성면보건지소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155-5번지	옥성면 일원
	도개면보건지소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76-1번지	도개면 일원
	해평면보건지소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58-22번지	해평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105-3번지	산동면 일원
	장천면보건지소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721-5번지	장천면 일원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진료소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962-2번지	습례1·2리, 봉남1·2리 소재리
	연악보건진료소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725번지	오가1·2·3리, 상송리 안곡1·2리
	덕촌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323-6번지	산촌리, 태봉1·2리 대원1·2리, 덕촌1·2리
	구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431번지	구봉1·2리, 옥관1·2리
	가산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 656-4번지	가산1·2리, 동산리 용산1·2리
	다곡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809-1번지	다곡1·2리, 신림리 도개1·2리
	낙산보건진료소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04번지	낙산1·2·3리, 일선리
	대방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18-5번지	신촌리, 황산리,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
	구운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86-4번지	괴평1·2리, 송림리 다식리
	송백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면 송산리 637-4번지	백현1·2리, 송산리
	임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204-3번지	봉산1·2리, 임천리
	금산보건진료소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454-2번지	금산리, 오로1·2리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평생교육원	구미시 공단동 256-17번지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 송정동 75번지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남통동 288-3번지
구미시립도서관	구미시 형곡동 142번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구미시 원평동 460-1번지

【별표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구미시선산출장소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2-3번지	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 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 (단, 농정, 유통축산, 산림경영 업무는 관할구역을 시전역으로 한다.)